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41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 의 자 : 임종성 · 조승래 · 이춘석

남인순 · 강훈식 · 정춘숙

기동민 · 이인영 · 안규백

이찬열 · 윤관석 · 문희상

김정우 · 김해영 · 제윤경

최운열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사본(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사본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26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사본(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관을 대신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사본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u></p>